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8일, 김태년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2. 20.)

상정, 축조심사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3. 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3. 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태년의원)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의제로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프리랜서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는 노동자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음을 고려하여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출산 크레딧 제도는 출생률 제고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강화하고, 노령연금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연동하여 감액하는 제도는 근로 의욕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등 시대 흐름에 맞추어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현행법상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기간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소득활동 연계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수의 60대가 부모와 성인자녀를 동시에 부양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 등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는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동 제도의 폐지는 주로 고소득자의 수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점과 단기간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등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군복무크레딧과 관련하여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복무기간 전체’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다만,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이 전가되지 아니하도록 해외사례와 시나리오별 재정부담의 총량 비교결과 등을 참고하여 군복무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는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 현역병의 봉급 인상속도를 고려하여 군복무크레딧 보장성 강화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보장성 강화논의를 위하여서는 보건복지부 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로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개정안의 내용을 채택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